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5. 6. 20.(금) 10:00

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
관한 조례안

(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701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5. 5. 29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5. 29.

2. 제안이유

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천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설립목적과 재단의 사업(안 제1조부터 제4조)
- 나.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(안 제5조)
- 다. 정관 기재사항(안 제6조)
- 라. 임원 및 이사회 구성(안 제7조부터 제10조)
- 마. 출연금의 교부(안 제11조)
- 바. 수익사업 및 사업의 위탁(안 제12조 및 제13조)
- 사. 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(안 제14조)
- 아. 지도·감독, 공무원 파견(안 제15조 및 제16조)
- 자.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(안 제17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 - 2)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 - 3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6조
 - 4) 「민법」 제32조
 - 5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4
- 나. 예산조치: 2025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예정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이유

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금천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1) 설립목적과 재단의 사업(안 제1조부터 제4조)

- 재단법인 금천복지재단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목적과, 적용범위,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을 명시함.

2)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, 정관(안 제5조, 제6조)

- 재단의 기본재산은 금천구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함.

3) 임원 및 이사회 구성(안 제7조부터 제10조)

-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도록 하였고,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도록 함.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.

5) 출연금의 교부, 수익사업(안 제11조, 제12조)

-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재단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.

6) 사업의 위탁 및 자료 제공(안 제13조)

-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, 구와 그 소속기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.

7) 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(안 제14조)

8) 지도·감독, 공무원 파견(안 제15조 및 제16조)

9)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(안 제17조)

다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금천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단법인 금천복지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 근거 법률인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그동안 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서울시의 타당성 검토,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한 전문가와 주민들이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는 바 재단 설립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보이나 재원 부담, 타 자치구 사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.

관계법령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(약칭: 지방출자출연법)

[시행 2020. 12. 10.] [법률 제17389호, 2020. 6. 9., 일부개정]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獎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9. 12. 3.>

③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설립 목적
2. 주요 업무와 사업
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(약칭: 공익법인법)

[시행 2017. 12. 12.] [법률 제15149호, 2017. 12. 12., 일부개정]

제4조(설립허가 기준) ① 주무 관청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, 사단법인은 회비·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(財源)의 수입(이하 각 “기본재산”이라 한다)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.

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, 수혜(受惠) 대상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[전문개정 2008. 3. 14.]

사회복지사업법

[시행 2025. 1. 3.] [법률 제19893호, 2024. 1. 2., 일부개정]

제16조(법인의 설립허가) ① 사회복지법인(이하 이 장에서 “법인”이라 한다)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1. 26.>

민법

[시행 2025. 1. 31.] [법률 제20432호, 2024. 9. 20., 일부개정]

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지방공무원법

[시행 2024. 12. 31.] [법률 제20621호, 2024. 12. 31., 일부개정]

제30조의4(파견근무)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,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국가기관, 공공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(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), 국내외의 교육기관·연구기관,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,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·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·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「형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·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·기간·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 12. 31.]